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7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 강선영·유영하·고동진

강대식 • 박준태 • 최수진

이헌승 · 나경원 · 배준영

유용원 · 이만희 의원(11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 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탄약의 폐기에 대한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 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제13조의2에 따른 탄약 폐기의 기준과 전년도 탄약 폐기 현황(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3(탄약의 폐기에 대한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제13조의2에 따른 탄약 폐
	기의 기준과 전년도 탄약 폐기
	현황(종류, 수량, 소요 비용 등)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
	<u>할 수 있다.</u>